

의안번호	2215179
의 퇴 인	김병주의원
회 답 일	2026.4.29.
추계번호	25D70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조정 시 민간인통제초소 33개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612억 7,100만원(연평균 153억 1,800만원)으로 추계됨
- 안 제5조제1항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할 경우, 해제되는 구역의 측량 및 지형도면 작성 시 소요되는 비용과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할 경우 민간인통제초소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추계에 포함되지 않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485	1,485	29,151	29,151	61,271	15,318

주: 추가재정소요에는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해제되는 구역의 측량 및 지형도면 작성 시 소요되는 비용과 민간인통제선 조정 시 민간인통제초소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25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에서 “군사분계선 10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으로 변경(제1항) 민간인통제선의 현행 범위를 “군사분계선의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군사분계선의 이남 5km 범위 이내”로 변경(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25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에서 “군사분계선 10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으로 변경하고, 민간인통제선의 현행 범위를 “군사분계선의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군사분계선의 이남 5km 범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해제되는 구역의 측량 및 지형도면 작성해야 하며,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민간인통제선 초소를 이전해야 하는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개정안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25km 범위 이내에서 10km범위 이내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군사분계선 10km와 25km 사이 구역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마목¹⁾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히 제한보호구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측량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조정 시, 국방부의 제출자료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군사분계선 기준 5km 이남 지역에 위치한 민간인통제초소는 전체 69개 중 33개로 가정함
 - 실제 초소 위치에 따라 시설 및 철조망 등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소요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나, 새로 설치된 민간인통제초소의 구체적인 위치 및 공시지가 자료 부재로 부지매입비는 추계에서 제외함
 - 민간인통제초소 1개소 당 이전비용은 2026년 초소이전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기준에 최근 10년간 연평균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4.9%²⁾를 적용하여 산정함
 - 33개 민간인통제초소 이전은 일괄적으로 추진하되, 「군 시설사업 연차별 예산배분 기준」에 따라 초소이전공사는 4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초소이전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 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2) 건설공사비지수

구분	2016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건설공사비지수	85.27	99.86	104.07	119.77	127.1	129.77	131.03	4.9%

주: 매년 1월 기준으로 작성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민간인 통제초소 이전(안 제5조제2항)

- 개정안에 따라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의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군사분계서의 이남 5km 범위 이내로 변경할 경우,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라 이전해야 할 민간인통제초소는 전체 69개 중 33개로 가정
- 민간인통제초소 1개소 당 이전비용은 2026년 초소 이전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기준에 최근 10년간 연평균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4.9%를 적용하여 산정함
 - 33개 민간인통제초소 이전은 일괄적으로 추진하되 「군 시설사업 연차별 예산배분 기준」에 따라 초소이전공사는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비용을 연차별로 배분함

[표 2] 민간인통제초소 1개소 이전 비용(2026년 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 내용	예산
① 민통초소 상황실 신축 (화장실, 고가초소 포함)	약 35㎡ (10평)	260
② 경계 초소 (이동식)	3㎡, 1개소	20
③ 병영생활관 울타리 및 진입로 포장	도로보강 병행	72
④ 통신장비 이전 공사	M-BCN 장비 이전	20
⑤ 경계시설 차양대 / 출입문 설치	야간폐쇄에 따른 소요	35
⑥ 민통초소 표지판	입·출 간판 (LED 2개소)	4
⑦ CCTV / 도로 차단시설	민통초소 경계 및 우회로차단	10
⑧ 민통선 경계·감시시설	민통선 일대 철조망 연결 (3km), 민통선 감시 CCTV (4개소)	1,160
⑨ 출입통제시스템	CCTV 4개소 / 우회로 차단시설 설치	27
합계		1,608

자료: 국방부

- 민간인통제초소 이전에 따른 재정소요는 공사비와 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하며, 2026년 초소이전 예산 내역에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내역을 구분하기 곤란하여, 총사업비에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역산하는 방법으로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구분함

- 추계기간 4년 중 2027~2028년에 설계를, 2029~2030년은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설계 대가요율³⁾⁴⁾과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건축감리 대가요율⁵⁾ 및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을 직선보간법⁶⁾에 따라 산출된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가 시작되는 2029년의 총사업비 18억 5,700만원⁷⁾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
 - 직선보간법으로 산출된 요율은 설계비 5.162%, 감리비 1.204%, 시설부대비 0.559%임
- 설계비는 설계가 이루어지는 2027~2028년에 50%씩 배분하며,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2029~2030년에 50%씩 배분함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따르면, 공사비 10억원 및 20억원의 대가요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10억원	7.03	5.86	4.68	6.39	5.32	4.26	5.75	4.79	3.83
20억원	6.22	5.19	4.15	5.66	4.72	3.77	5.09	4.24	3.40

자료: 국토교통부

4) 종별 구분을 2종(보통)으로 적용하였고, 설계도서량 구분은 중급으로 적용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감리 대가요율에 따르면, 공사비 10억원 및 20억원의 대가요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자료: 국토교통부

6) 직선보간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text{요율}(\%) = Y_1 - \{(\text{당해 공사비} - X_1) \times (Y_1 - Y_2) / (X_2 - X_1)\}$$

(X₁: 작은 금액, X₂: 큰 금액, Y₁: 작은 금액 요율, Y₂: 큰 금액 요율)

7) 2026년 예산 기준 총사업비 16억 800만원에 최근 10년간 건축공사비 연평균 증가율 4.9%를 적용하여 산정

[표 3] 민간인통제초소 이전비용 단가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합계
공사비	0	0	868	868	1,737
설계비	45	45	0	0	90
감리비	0	0	10	10	20
시설부대비	0	0	5	5	10
합계	45	45	883	883	1,857

주: 1) 실제 공사 기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2) 2개 연도에 걸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연도별 연부액 비율을 50%로 가정함
 3) 비용에는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민간인통제초소 이전비용 단가에 이전할 초소 33개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공사비 573억 1,100만원 등 612억 7,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민간인통제초소 이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합계
공사비	0	0	28,656	28,656	57,311
설계비	1,485	1,485	0	0	2,970
감리비	0	0	330	330	660
시설부대비	0	0	165	165	330
합계	1,485	1,485	29,151	29,151	61,271

주: 1) 실제 공사 기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2) 2개 연도에 걸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연도별 연부액 비율을 50%로 가정함
 3) 비용에는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조정 시 민간인통제초소 33개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612억 7,100만원(연평균 153억 1,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485	1,485	29,151	29,151	61,271	15,318

주: 추가재정소요에는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해제되는 구역의 측량 및 지형도면 작성 시 소요되는 비용과 민간인통제선 조정 시 민간인통제초소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해제되는 구역의 측량 및 지형도면 작성 시 소요되는 비용과 민간인통제선 조정 시 민간인통제초소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